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02
----------	-----

2024. 12. 11.(수)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조성태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5일
-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 라. 상정일자 : 2024년 11월 28일
  -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조성태 의원)

### 가. 제안사유

-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범위를 기존 “한 자녀”에서 “해당년도 한 자녀”로 확대함(안 제7조).
- 대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의 기준을 기존 “고등학교

공납금(최고금액)의 120퍼센트”에서 “200만원 이내”로 개정함(안 제11조).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신복순)

- 본 조례안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범위를 “해당년도 한 자녀”로 확대하고, 대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의 기준을 “200만원 이내”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7조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유공자 장학생, 우등생 장학생, 특기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기존에는 새마을지도자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한정하여 선정하였으나,
  - 이를 새마을지도자 한 명에 대하여 해당년도 한 자녀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 학령인구 감소로 선발대상 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적 부담 증가도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는 대학교 장학생 장학금액 산정기준을 기존에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로 하고 있었으나,
  - 이를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
  - 충북지역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공납금을 기준으로 대학교 장학생 장학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정액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

남 등 7개 광역단체는 조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대학교 장학생 장학금액을 200만원 이내의 정액 형태로 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는 도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기존 “매 학기 개시 30일 이내”에서 “1학기 개시 후 90일 이내”로, 안 제12조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서 “장학생 선정 후 50일 이내”로 절차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그밖에 제5조 및 제1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여한 자”를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생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3.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장학생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장학생 선발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새마을지도자 한명에 대하여 해당년도 한자녀로 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제9조제1항 중 “매 학기 개시 30일 이내”를 “1학기 개시 후 9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를 “20

0만원 이내로 한다”로 하고,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 중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를 “장학생 선정 후”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선발된 자가”를 “선발된 사람이”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5조(포상)</b>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u>기여한 자</u>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5 조 ( 포 상 )</b></p> <p style="text-align: center;">----- -----<u>기</u> ----- 여한 <span style="float: right;">사람</span> ----- --.</p>
<p><b>제7조(장학생의 자격) ①</b>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p> <p>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생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p>	<p><b>제7조(장학생의 자격) ①</b>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p> <p>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생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p> <p>3.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p>

3.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장학생 선발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새마을지도자 한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제9조(선정) ① 도 새마을 회장은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최종결과를 도지사에게 매 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 4. (생략)

제11조(장학금액)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교 장학

② 장학생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장학생 선발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새마을지도자 한명에 대하여 해당년도 한자녀로 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제9조(선정) ① -----  
-----  
----- 1학기 개시 후 90일 이내-----  
-----  
-----  
--.

② (현행과 같음)

1. ----- 따른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장학금액) -----  
-----  
----- 200만원 이내로 한다.



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도 새마을회 시·군지회장이나 시·군 새마을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② (생략)

----- 범위에서 -----  
-----  
-----  
-----.

**제12조(장학금의 지급시기)**  
-----  
----- 장학생 선정 후 -----  
-----  
-----  
-----  
-----.

**제13조(지급의 정지) ①** -----  
선발된 ----- 사람이  
-----  
-----  
-----  
-----.

- 1.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